

[] 항공기정비업
[] 항공기취급업
[] 항공기대여업
[]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
[] 항공레저스포츠사업

등록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	처리기간 14일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		전화번호
			팩스번호
신청내용	자본금		
	기타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		
	임원의 명단		

「항공사업법」 제42조제1항, 제44조제1항, 제46조제1항, 제48조제1항,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, 제43조제1항, 제45조제1항, 제47조제1항, 제49조제1항에 따라

[] 항공기정비업
[] 항공기취급업
[] 항공기대여업
[]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
[] 항공레저스포츠사업
등록을 신청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지 방 항 공 청 장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「항공사업법」 제42조, 제44조, 제46조,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2. 다음 사항[자본금, 상호·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, 해당 사업의 취급 예정 수량 및 그 산출근거와 예상 사업수지계산서, 필요한 자금 및 조달방법, 사용시설·설비 및 장비 개요, 종사자의 수, 사업 개시 예정일, 도급(하도급을 포함합니다)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의 범위와 책임, 수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(항공기취급업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]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3.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(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영업구역 범위 및 영업시간, 탑승료·대여료 등 이용요금, 항공레저 활동의 안전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안전 관리대책(항공레저스포츠사업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「항공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1조
담당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(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	

처리절차

